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 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
**2014년 5월 28일(수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신재생에너지과장 노건기(044-203-5160), 팀장 장근무(5161), 박병기 사무관(5172)

## 태양광 빌려쓰고, 전기료 줄이세요

### - 태양광보급의 새로운 패러다임,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윤상직)는 5월 28일『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』실시계획을 발표하였음

**〈 태양광 대여사업 사업구조 〉**




○ 주택소유자 :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(3kW)을 설치하고,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

○ 대여사업자 :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(REP)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

* REP(Renewable Energy Point) :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(MWh기준)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

**'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주요내용**

○ (소비자) 최대 7만원의 태양광 대여료를 지불하며, 설치 후 최소 7년간(기본약정기간)은 태양광 설비를 사용



- 소비자 희망시 계약을 연장(최대 7년) 할 수 있으며, 동 연장기간의 대여료 상한은 월 35천원임(초기 대여료의 1/2)

*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(월전기료 101천원)는 설치후 7년까지는 월평균 21천원, 8~15년간에는 월 56천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
- 월간기준 : 전기료(106천원)-대여료(70천원)-설치후 전기료(15천원)=21천원

○ (대여사업자) 기본약정기간에는 대여료와 발급받은 REP(216원/kWh)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, 설치 후 8년부터는 대여료(초기 대여료의 1/2)만으로 운영

○ (대상가구) 월 전력사용량 평균이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(약 150만호)을 대상

□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,

○ 금년에는 '13년 시범사업과 비교시 사업대상 확대, 대여료 인하, REP 인상,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이 개선된 바, 태양광 대여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

* (대상가구) 550kWh 이상→350kWh 이상 / (대여료 상한) 101천원→70천원 / (REP) 128원/kWh→216원/kWh / (약정기간) 12년→7년

< 첨 부 > '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공고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장근무 팀장(☎ 044-203-5161)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김선택 과장(☎ 031-260-467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